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6775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7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4. 8. 2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2025년 2월 27일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2025. 3. 7.).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단서 신설> 2.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5.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